

민간 경비원(보안요원)의 정당한 무기사용 방안 연구: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Justifiable Use of Weapons by Private Security: Focusing on Multi-user Facilities

오한길* · 안계원** · 나예지***
Oh, Hangil · Ahn, Kyewon · Na, Yeji

요약

2023년 8월 3일 다중이용시설과 운송시설이 맞닿아 있는 서현역 부근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차량돌진 및 흉기난동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였다. 차량을 인도로 몰아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차량돌진으로 5명, 흉기난동으로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리차드김, 2023).

서현역의 묻지마 범죄 이후, '살인예고 지도' 서비스의 등장하면서 많은 이용객이 상시 붐비는 변화가 및 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다(김잔디 & 최윤선, 2023).

급격히 늘어나는 국민의 불안감으로 정부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범죄'로 명명하고 근절을 위해,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강은민, 2023).

이상동기범죄에 따른 강력한 대책으로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다중이용시설 대한 안전대책들이 강구되어지고 실정에서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경비원에게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선 역할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일선의 초동대응이 인력과 장비, 정당방위에 대한 법제도의 뒷받침 미흡 등으로 인해 민간 경비원의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민간 경비원 최소 경력배치 기준, 현행 제약을 위한 무기사용 기준, 이용객 보호를 위한 경비원 위력 사용 기준 등의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 경비원이 범죄로부터 시설 이용객을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범죄 등의 위험성과 민간 경비원의 무기사용과 관련한 법제도적 한계점을 고찰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 민간 경비원, 보안요원, 무기사용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23년 7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8월 3일 서현역 차량돌진 및 흉기난동, 8월 17일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8월 19일 2호선 지하철 흉기난동 등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활용품을 흉기로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은 흉기난동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김현지 & 조해수, 2023). 이와 더불어 "Terrorless.01ab.net"을 통해 살인예고 글에 대한 전국적인 예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잇따른 묻지마 범죄로 인한 범죄의 공포 속에 8월 6일 신논현역에서는 지하철 이용하는 시민들은 묻지마 범죄로 오인하고 황급히 열차에서 긴급대피하는 소란도 벌어졌다(신혜연, 2023).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공포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는 것이다. 위의 사건은 대부분 일반사람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한 다중이용시설로 많은 이용객들로 상시 붐비고 있어 사건 발생 시 다수의 잠재적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운수시설, 판매시설 등의 복합 다중이용시설로 민간 경비원이 배치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즉, 민간 경비원은 다중이용시설의 관리권원 내에서 「경비업법」에 따라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경비원의 법제도적인 부분에 있어 범죄 대응의 기능을 보완 되어진다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인명피해를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압사사고 및 테러 등의 사회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어 상당히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희원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사 hangiloh@korea.kr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akw7471@korea.kr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layj1020@korea.kr

하지만, 다중이용시설 내의 민간 경비인력 운용 여력이 범죄의 대응에 있어 그 숫자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며, 인력에 대한 인건비, 대응장비 등의 각종 예산이 소요되므로 쉽게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이며, 「경비업법」 상에 경비업자의 의무 및 대응장비에 대한 한계가 있어 현 시점에서 민간 경비원을 활용한 이용객의 보호가 사실상 쉽지 않다.

따라서, 묻지마 범죄 등 늘어나고 있는 범죄와 잠재적 테러위협 등의 각종 위해·위험요소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범죄 대응에 필요한 다중이용시설 민간 경비원의 정당한 무기사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결론

국내 민간 경비원의 인력은 경찰대비 1.1배의 수준으로 미국 3배, 영국 2배보다 비율이 많이 낮은 수준에 있다(유병후, 2018). 또한 시설 관리권원 내 민간 경비원의 강제력 행사에 있어 경비원의 무기사용은 상당한 제한이 있다. 위력순찰을 통한 범죄 억제 효과 또한 「경비업법 제16조의2(경비원의 장비 등)」에 따라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범죄대응 장비의 휴대가 시설주 및 관계인의 선택사항이므로 범죄상황에서의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23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연구 과제의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연구를 가능케한 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유병후. (2018). 민간경비의 현 위치, 그리고 전망.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7(1), 71-104.